

□ 정부시책 □

「컴퓨터 2000년 문제 종합대책」 추진

정부는 2000년 이후 컴퓨터 연도표기 인식 2000년 문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
 착오로 야기되는 「컴퓨터 2000년 문제」를 어 알려드리오니 각 기업체에서도 자체 계획
 해결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민·관 대 을 마련, 문제해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
 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이 「컴퓨터 랍니다.

산업부문 컴퓨터 2000년 표기문제 추진대책

1. 개요

- 컴퓨터 2000년 표기문제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2년 정도 앞둔 지금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 사항
- 오는 2000년에 이르면 현재 두자리 숫자로 표기하고 있는 컴퓨터의 연도표기 방식으로 인해 국가 전체적으로 혼란 초래
- 공공부문과 대기업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미흡
- 예) 1998년 4월 1일 : 98 : 04 : 01로 표기
 → 1998년 4월 1일로 인식
 2000년 4월 1일 : 00 : 04 : 01로 표기
 → 1900년 4월 1일로 인식

○ 예상되는 문제점

- 산업분야에서 재고·납품관리, 업무일수에 따른 급여계산, 발주관리 등 응용 S/W 오류 발생
- 금융분야의 이자계산등 연산처리와 행정·금융·원전·운송·통신 등 사회전반에 걸쳐 문제 내재

2. 국내외 동향

가. 선진국

□ 미 국

- 문제해결의 시간적 제한을 감안하여 연방 정부차원에서 적극 대응
- '98. 2. 4 클린턴 대통령은 연방기관의 대응

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명령(Year 2000 Conversion)을 발령

- 대통령 직속으로 Year 2000 Conversion Council을 설치하여 추진상황을 감독하고 정책을 조정

□ 일본

- 정보서비스산업협회에서 서기 2000년 문제 위원회를 발족('96. 5)하는 등 대부분 민간중심으로 대응
-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통산성과 대장성 등에서 지원대책 마련
 -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문제 해결 비용의 손비 인정)

□ 영국

- 컴퓨터 2000년 문제에 대한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컴퓨터통신처 산하에 밀레니엄 버그 논의그룹을 구성하여 대처

나. 국 내

□ 추진체계

- 정보통신부 : 국가사회 전반의 대책 마련 (종합대책반 구성, '97. 2)
 - 한국전산원을 통해 공공부문의 대책수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활동(세미나, 설명회 등) 전개
- 행정자치부 : 공공부문의 분야별 대응
 - 34개 부처에 대책반 마련(산업자원부 : 전산통계 담당관실)
 - 중앙부처, 산하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책 수립 총괄

- 민간부문 : 업종별·기업별로 자율 추진
 - 금융기관 : 금융정보화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
 - 정보시스템 공급시 : 정보통신진흥협회 내에 정보통신업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전략 마련 및 홍보

□ 부문별 추진실태

- 중앙행정기관
 - 행정자치부에서 컴퓨터 2000년 문제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배부
 - '97년말 현재 42개 기관중 8개기관 해결, 34개기관 '99년말 완료
- 지방자치단체
 - 각 시·도별로 대책반을 구성·운영중에 있으나, 해결작업 미흡
 - '98. 6월에 세부대책을 수립하여 문제해결 추진예정
-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공공부문
 - 기관별로 기 추진중이거나 금년에 추진할 계획 마련
 - 금융기관은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시중은행이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99년 상반기까지 문제해결 예정
- 민간기업
 - 대기업은 그룹차원에서 계열 SI업체를 통해 문제 해결
 - 중소기업은 재원부족, 인식도 저조 등으로 대응 지연
 - 산업자동화설비, 자동제어시스템 등에 대

한 실태파악 필요

3. 산업부문의 추진대책

- 공공부문에 대한 문제해결 추진(전산통계담당관실)
 - 대상 : 부내 전산업무, 원전, 전력 및 에너지, 산하기관 전산화 등
 - 문제해결 추진체계 강화
 - 산업자원부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역할을 수행
 - 관련기관 및 공기업의 원전·전력 및 에너지·전산화 부문 등에 대한 시스템현황·추진상황을 조사·관리 및 미흡한 부문의 조기추진 독려
 - 홍보를 통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적 협조 확대
 - 한국전산원의 기술자문단, 정보통신진흥협회의 전문기술인력 Pool, 기타 정보유통체계와 정보안내센터에 대한 내용 홍보
 - 한국전산원 : http://Y2000.or.kr/NEW_DIR/NEW_NEW/report.htm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http://www.ccpak.or.kr>
- 산업자동화 등 민간부문에서의 대책(산업표준정보과)
 - 관련업계의 추진상황 점검 및 조기해결 독려
 - 업종별 단체를 통한 추진상황 파악과 독려를 위한 회의 개최
 - 도출된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 해결(자금지원 등)
 - 기술적사항과 기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전산원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협조를 통해 지원
 - 중소기업의 문제해결 지원(중소기업)
 - 『중소기업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문제 대책협의회(가칭)』 구성
 - 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 노동부, 중진공, 중기협중앙회, 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전산원, 중소기업분야 및 정보통신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중소기업 및 컴퓨터제조 관련업체 실태조사
 - 지원방안 수립 및 지원업체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자금지원
 - 중소기업의 2000년 문제 해결 소요비용 지원
 - 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 중소기업 진단은행 등의 기존 중소기업지원자금 활용('99년 예산 반영 추진, '98년은 구조개선자금 등 활용)
 - 2000년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실시
 - 생산성본부, 한국전산원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98년 상반기기중 추진

○ 2000년 문제 설명회 개최 및 애로상담센터 설치(중진공)

WTO 제 2단계 정보기술협정(ITA-II) 추진

산업자원부는 '98년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EU, 일본등 43개국이 참가하여 정보관련 제품의 관세를 철폐하고자 하는 제 2단계 정보기술협정(ITA-II)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 ITA : Information Techonology Agreement)

제 1단계 정보기술협정은 지난 '96년 1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 1차 WTO 각료 선언에서 합의하여 '97년 7월부터 203개 정보통신제품에 대한 관세를 2000년 1월까지 철폐하기로 합의한 협정이다.

이번 2단계 정보기술협정 협의는 기 합의된 203개 품목 이외에 추가로 300여개 품목을 포함하여 관세를 철폐하기 위한 후속 논의이다.

미국, EU,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등 14개국은 인쇄회로기판(PCB)제조장비 축전기제조장비 등의 장비류, 계측·검사장비·변압기·전동기 이외에도 광학기기, 영상·음향기기(Audio/Video)등 광범위한 정보전자제품을 제안하였다고 산업자원부는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이들 품목의 관세철폐로 국내 업계의 생산 및 수출입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업계가 민감하게 여기는 부문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부문은 포함되어, 우리 제품의 수출증대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대국과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번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EU·일본등은 당초 WTO 상품 이사회가 의결한 것처럼 이번 협의에서 참여국의 민감품목등 기본 입장을 파악한 후 오는 6월 협의를 재개하여 6월 30일까지 최종 타결하고 '99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토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1단계 정보기술협정결과와 2단계 제안품목 >

1. 1단계 정보기술협정(ITA-I) 결과

- 목 적 : 2000년까지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
- 참가국 : '98년 3월 현재 43개국(EU 15개국 포함)
- * 동 43개 참여국가의 세계 정보기술제품 교역량 비중은 93%
- 대상제품 : HS 6단위 기준 203개 품목
 - 반도체소자, 컴퓨터 H/W, S/W, 통신장

비, 계측장비, 반도체제조장비, 일반전자 부품등 7개 품목군

- 관세인하방법 : '97년 UR양허세율을 기준으로 하여 '97년-2000년간 4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
- '97. 7. 1 : 1단계 관세인하(25% 인하)
- '98. 1. 1 : 2단계 관세인하(25% 인하)
- '99. 1. 1 : 3단계 관세인하(25% 인하)
- 2000. 1. 1 : 최종 관세철폐
- * 우리나라는 컴퓨터등 10개 품목에 대해 2002-2004년까지 관세철폐기간 연장

2. 2단계 정보기술협정(ITA-II) 제안내용 분석

- 가. 국가별 제안내용
- 14개 국가에서 총 334개 품목 제안(초기 제안 401개) - 미국, EU, 일본등은 PCB · 축전기 · LCD 생산장비를 중심으로 제안
-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등 동남아 국가는 주로 가전제품을 제안
- 호주는 PCB 제조장비 및 재료등을 제안
- 이스라엘, 스위스, 노르웨이 등은 항해용 장비등을 제안

(정보기술협정(ITA-I) 대상품목)

구 분	반도체 소자	S/W	컴퓨터 H/W	통신 장비	반도체 제조장비	계측기기	일반전자	HS 미분류	계
품목수	16	11	10	14	78	10	51	13	203

제 안 국	품목수	주 요 내 용
미 국	75	PCB 및 축전기 제조장비, 계측장비, 커넥터 등
E U	60	PCB 및 LCD 제조장비, 복사기, 전선류 등
일 본	46	PCB 제조장비, 계측기, 가전제품(DVD, 인터넷TV) 등
카 나 다	4	전기기기(오실레이터, 전기보드, 콘솔 등)
호 주	67	PCB 제조장비 및 소재
싱 가 폴	39	가전제품(헤드폰, 녹음기, VCR, TV, 브라운관 등)
홍 콩	74	가전제품(녹음기, TV등), 전지, 산업기계, 전기기기(퓨즈, 차단기, 릴레이 등)
대 만	13	가전제품(브라운관, 그래픽 직시관 등)
터 어 키	1	광섬유 및 광케이블

제안국	품목수	주요내용
이스라엘	4	항행용장비(레이더기기, 항행용무선기기 등)
스위스	3	광섬유 및 광케이블, 전기기기(보드, 패널, 콘솔 등)
필리핀	6	LCD, PCB 부분품 등
노르웨이	11	항행용장비(레이더기기, 항행용무선기 등)
말레이시아	13	DVD, 오디오 등 가전제품
계	401	

* 총계는 국가별 중복이므로 실제 합계는 이보다 축소됨.

나. ITA- I 과의 품목 비교

○ ITA- II에서는 PCB, 축전기, LCD제조장비 등 IT 제품의 생산장비와 가전제품등 대부분 Non-IT 품목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ITA- I에서는 반도체, 통신장비, 컴퓨터, 소프트웨어등 IT 제품이 대부분이고 반도체제조장비, 계측장비, 기타의 Non-IT 제품이 일부 포함됨.

구분	ITA - I (203개 품목)	ITA - II (334개 품목)
품목범위 (품목수)	반도체제조장비(78) 반도체소자(16) 통신방지(14) 컴퓨터 및 주변기기(12) 소프트웨어(11) 계측장비(10) 기타(64)	PCB 제조장비 및 재료(85) 축전기, LCD 제조장비(19) 공작기계(16) Audio/Video 등 가전제품(64) بات데리(10) 항행용장비(14) 기타(141)

* 기타는 전선, 변압기, 저항기 등의 품목임.

수출 애로타개 50개 과제 선정

수출확대 차원에서 종합상사에 대해 부채비율 개선의무의 적용을 완화하고 수출기업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부가세와 법인세 환급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영세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가입 등 사회보장성 기금 납부를 일정기간 면제해주거나 국가에서 보조

하며 종합상사 본지사간 수출환어음 매입, 사후송금방식에 대한 무역금융지원 대책 등도 추진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수출확대를 통한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해서는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수출 애로타개 50개 과제를 선정,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 추진키로 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수출애로타개 과제(1차분)

1. 규제완화·제도개선 부문

1) 부가세, 법인세 환급방식 개선

□ 건의내용

- 부가세(신고후 15일후 환급), 법인세(신고후 30일이후 환급) 환급기일을 단축해주거나, 이들 세금의 환급방식을 관세환급방식(일단 세금 부담없이 수출토록 한 뒤, 분기별로 정산 과세)과 동일하게 해 줄 것을 건의

2) 임·가공 업체에 대한 쓰레기 종량제 완화

□ 건의내용

- 지정 쓰레기봉투에 의한 배출(쓰레기 종량제) 제도의 임·가공 업체에 대한 예외인정

3) ATA Carnet증명 발급업무의 지방상공회의소 허용

□ 건의내용

- ATA(Admission Temporaire Admission) Carnet 증명 발급업무를 지방상공회의소에 서도 취급

4) 수출관련 표창 및 인·허가증의 영문본 발급

건의내용

- 정부포상이나 자격증이 수출업체의 대외 공신력 향상에 공헌하나, 대부분 국문으로 되어 있어 대외 홍보자료로 활용 곤란

5) 종합무역상사 여신규제 대상 예외인정

건의내용

- 여신관련규정상 동일인 및 동일계열군 여신한도 규제 대상에서 종합상사를 제외

6) 부채비율 예외인정

건의내용

- 종합상사가 유통업임을 감안하여 제조업과 상이한 재무구조 개선기준을 적용하여 일정수준(400~500%)의 부채비율을 인정

7) 영세 수출기업에 대한 사회보장성기금 납부의무 면제

건의내용

- 근로자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영세 수출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입등 사회보장성 기금 납부를 면제해주거나 정부보조 요망

8) 생활보호대상자의 수출기업 단순생산직 취업시 자격유지

건의내용

- 생활보호대상자(생보자)들이 영세 수출업

체의 일정액 이하 생산직에 종사하는 경우 '생보자'로서의 자격을 박탈하지 않을 것을 요망

9)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여신한도대상 제외

건의내용

- 현행 은행법 및 관련규정상 동일인 및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 대상에서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제외

10) 귀금속류중 수출하자품에 대한 재반입 허용기간 제한 철폐

건의내용

- 1년초과 재반입된 瑕疵있는 귀금속류에 대해서는 수리후 재수출하였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관세환급허용

2. 외환·금융 부문

1) 무역금융 지원확대

건의내용

- 수출실적에 따라 산정되는 무역금융 융자한도를 폐지하여 수출 주문이 급증하고 있는 우량기업을 지원
- 무역금융한도의 완전사용이 필요
- 한은의 총액대출한도를 증액하여 무역금융용으로 별도 책정

2) 원자재 수입결제 자금지원

 건의내용

- 50억불 규모의 수출입결제용 외화자금확보(외환보유고가 늘어나는 경우 100억불 규모로 확대)
- IBRD 자금 등을 활용하여 원자재 수입결제 자금 지원 : 30억불
- BIS 기준 충족 은행들의 원자재 수입관련 금융 적극 지원
- 해외 각국의 수출지원자금 확보
- 알루미늄 등 국내 공급이 어려운 원자재의 할당관세 적용('98. 12월까지 한시 적용)
- 수출입은행의 수입자금(2,000억원)을 특별 신용보증대상에 포함하여 대출 활성화
- 연지급수입 대지급금을 일반대출로 전환하여 업계의 연불금리 부담 완화 추진

3) 수출환어음 매입

 건의내용

- IBRD 자금 등 가용외화자금을 활용하여 D/A 등 외상수출 환어음 매입용도로 지원
- 시중은행들이 종합상사 본·지사간 수출 환어음(D/A어음 및 Usance L/C 환어음)을 적극 매입
- D/A, D/P 어음 매입관련 지점의 자율성 제고
- 산업은행이 매입한 수출환어음에 대하여 한국은행이 재할인

4) 수출입관련 금융기관의 취급수수료 인하

 건의내용

- 은행의 수출입관련 외환수수료 등의 적정 수준 인하

5) 플랜트, 선박수출시 금융기관의 보증강화

 건의내용

- 플랜트·선박 수출시 계약이행 또는 선수금 환급에 대하여 정부(한국은행)보증 실시
- 한국은행 등 보증이 여의치 않은 경우, 수출입은행의 보증 혹은 국내은행의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증보험 가입 유도

6) 수출입은행 및 산업은행의 무역금융기능 확대

 건의내용

- 수출입은행의 무역금융기능 확대
- 산업은행의 무역금융기능 강화

7) 국내은행의 수출보험공사 부보 중장기(2~3년) 연불어음 적극매입

 건의내용

- 국내 은행들의 수출보험공사에 부보된 중장기(2~3년) 연불 수출환어음 적극 매입
- 은행들의 동남아 국가들의 신용장 적극 매입

8) 수출보험 지원강화

 건의내용

- 현행 90%인 수출보험 부보율을 100%까지 탄력적으로 운용
- 보험금 지급시 선적시 환율 대신 지급시 환율을 적용

9) 사후송금방식(CAD, COD) 거래에 대한 무역금융지원

건의내용

- CAD, COD 방식에 의한 무역도 D/A, D/P 경우처럼 무역금융 제공

10) 선물거래소의 조속 설치

건의내용

- 정부가 검토중인 선물거래소 설립을 조속 추진하되, 시장원리에 입각한 민간기업 위주로 설립·운영

11) 종합상사 현지법인앞 수출용 Credit line 우선배정

건의내용

- 외국지점을 갖고 있는 시중은행들이 종합상사 현지법인에 대하여 Credit line(대출하도)을 외환위기전과 같은 수준으로 배정

12) 외환위기후 은행의 환율적용관행 개선

건의내용

- 수출기업의 달러의 원화 환전시, 환전시 환율을 적용

13) 바이어들의 외환 입금은행 착오시 수

수로 인하

건의내용

- Buyer들이 입금은행 착오시, 이체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은행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14) 외환 매입·매도율 조정

건의내용

- 은행의 외환 매입·매도율 차이가 너무 심하여 원자재를 수입해서 제품을 생산, 수출하는 업체는 환율인상에 따른 플러스 효과를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

15) 수출용 원자재 수입L/C 개설요건 완화

건의내용

- 수출신용장 미도착시, 바이어와의 계약서 또는 구매확인서만으로도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 허용(관련규정 개정)

16) 무신용장 거래방식에 대해 수출보험공사의 보증

건의내용

- 수출보험공사가 신용조사를 수행한 바이어와의 무신용장 거래방식에 의한 무역에 대해서는 보증한도액 범위내에서 D/A, D/P 거래에 대해서도 수출보험공사의 보증 실시

17) 농수산물 수출보험 개선

건의내용

- 신용조사기간 단축 및 신용조사 기준완화

18) 담보제도개선

건의내용

- 담보위주의 대출관행 시정
- 퇴직금 담보삭감 개선

19) 고금리에 의한 흑자부도 방지

건의내용

- 환율안정에 따라 IMF측과의 거시경제 운용에 관한 협의시 금리를 인하토록 조사

20)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원자재구입자금 융자기간 연장

건의내용

- 중진공의 원자재 구입자금 융자기간이 대부분 단기(6개월)인 바, IMF 프로그램의 적용이 2~3년 지속될 것을 고려 상환기간 연장

21)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요건완화

건의내용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시 기존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특례보증(간이신용보증 심사표)으로 처리하여 주고, 신규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 대신 L/C, 선수출계약으로 심사요망

3. 물류·통관 부문

1) 산업용 유류세금 인하

건의내용

- 산업용 경유가격 및 세금인하
- 현황 및 문제점
- 환율상승에 따른 유가인상, 산업용 경유에 대한 교통세, 특수세, 교육세 등의 부과로 제조업체 부담가중

2) 관세 및 통관제도의 개선

건의내용

- 국내경쟁이 미미하거나 국내생산이 되지 않는 부품 및 일부 기초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및 철폐
- 항구세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입항전 통관절차가 생산공장에 입접한 내륙지 세관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통관절차의 자동화 추진

3) 중부지역 물류기지 설치

건의내용

- 인천 혹은 영종도 신공항에 물류기지 건설
- 단기적으로는 중부지역 복합물류단지 설치

4) 컨테이너 확보지원

건의내용

- 컨테이너 확보지원

○ 선사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5) 수출서류 간소화

건의내용

○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출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간소화 필요

6) 선의의 관세사범 제재완화

건의내용

○ 착오에 기인한 선의의 관세사범에 대한 사면 및 제재완화

7) 내륙운송비 인하

건의내용

○ 내륙운송비 인하 유도 및 화물전용 고속도로 건설

4. 통상 부문

1) 통상마찰 사전대응

건의내용

○ 미국, EU등 주요국과의 통상마찰 사전예방을 위한 대응논리 개발 및 민·관 합동 산업협력단 파견

○ 민간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비절약운동이 내·외산 차별없이 소비의 합리화운동으로 전개되도록 유도

2) GSP 유지를 위한 통상교섭

건의내용

○ 외환위기후 우리의 1인당 GNP가 7천달러 수준으로 감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 향후 GSP가 재적용될 수 있도록 외교력 강화

3) 기업의 對日채무 연장을 위한 경제외교

건의내용

○ 개별기업 차원에서 일본계 은행 차입금의 만기연장이 어려움

4) 북미지역국가와의 육류검역협정 체결

건의내용

○ 미국 등 북미국가와의 육류검역협정 체결

5) 농산물 수출마케팅 지원

건의내용

○ 박람회, 시식회 등 정부차원의 농산물 마케팅 지원

6) 해외공관 수출지원기능 강화

건의내용

○ 재외공관, KOTRA 무역관 등 유관기관 주재원의 현지세일즈 기능강화 방안 수립 및 추진

7) 국가홍보 강화

건의내용

○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경제실상에 대한 해외홍보 강화

5. 기타 부문

특집프로그램을 방영

1) 수출대금확보를 위한 구상무역 추진

 건의내용

- 동남아 수출 및 투자대금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구상무역추진

2) 대기업 수출창구라는 종합상사에 대한 인식개선

 건의내용

- 종합무역상사가 중소기업제품 수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 종합무역상사 단지 대기업의 수출창구라는 일반의 인식개선을 위한 정부 노력을 건의
- KBS-TV, MBC-TV 등이 「종합무역상사」의 역할 및 중소기업지원 등에 대한

3) 철강제품의 편법수출 억제

 건의내용

- 철강 편법수출 자제를 위한 업계 자율노력을 유도

4) 무역실무인력 양성 및 수출저변 확대

 건의내용

- KOTRA, 각 대학의 국제대학원 등에서 무역실무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5) 무역업의 중소기업범위 상향조정

 건의내용

- 무역업에 대한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

내년도 산업정보화 계획 수립

산업자원부는 '99년도 산업정보화사업으로 CALS(광속거래)체계도입 여건확충, 중소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영지원 및 애로 해결 등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정부재정, 정보화촉진기금, 민간기술지원기관의 출연 등을 통해 96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9년도 산업정보화촉진시행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따라 산자부는 '99년에 산업부문 정보화사업의 상호보완적 역할 증대, 산업정보의 기업업무와 연계추진, 대기업과 중소기업·지역간 정보화 불균형 해소를 추진목표로 삼고 산업정보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99년에 20여종의 산업관련 정보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 산업 각부문의 상호연계서비스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CALS 실증모델사업 및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을 위해 270억원의 자금을 확보, 기업의 CALS체계 도입여건을 확충하며 전자상거래 종합대책에 따른 세부사업들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437억원을 투입, 중소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경영 및 애로해결을 지원하며 지역중소기업정보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정보화표준모델을 제공, 중소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허정보서비스 개선사업에 230억원을 투입,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하고 인터넷 부가서비스 시스템 개발을 통해 특허정보

서비스 기능의 고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전력 및 에너지, 원전, 산업자동화, 중소기업 등 주요부문의 컴퓨터 2천년 표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마인드 확산운동을 전개하고 중소기업의 애로해결을 지속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산자부는 지난해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운영, EDI(전자서류교환)표준화, 전자사업실증모델사업 등을 중심으로 산업정보화사업을 추진,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으나 정보화사업간의 협조 및 연계성 확보,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총괄조정기능 강화 등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했다.

産資部,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애로해결 적극 추진

産資部는 작년 12월에 구축한 외국의 무역·투자장벽 인터넷 데이터베이스를 그동안 시험운용을 거쳐 본격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KOTRA와 공동으로 운영하게 될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미국, EU, 일본, 중국을 비롯한 우리의 주요 교역 및 투자대상 53개국 220여건의 각종 무역·투자장벽 사례가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 기업이 해외영업활동상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들을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였다.

산자부는 1차로 수록된 장벽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통상교섭 활동을 외교통상부에 요청함과 동시에, 새로이 신고된 애로사항을 검토하여 추가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키는 등 기업의 애로사항 신고와 해결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외국의 무역장벽사례 이용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재외공관, KOTRA 해외무역관, 정부 관련부처, 국내 경제단체·협회·조합 등 240여곳에 일제히 배포하였다.

무역·투자장벽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터넷 주소 www.kotra.or.kr/FTB/로 접속하면 가능하다.

'98 품질경쟁력 우수 50대 中企 선정

국립기술품질원은 품질경영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품질경쟁력 우수 50대 중소기업』 선정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1. 기본방향

- 중소기업으로서 품질혁신, 원가절감 및 생산성향상 등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우수기업을 선정('97년은 대기업 50, 중소기업 50업체 선정)
- 기계, 전기, 섬유, 화학제품등 업종별로 품질경쟁력을 갖춘 소수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벤치마킹 모델로 활용
- 산·학·연 전문컨설턴트로 구성된 품질아카데미(126명) 회원을 활용하여 현지심사 및 기술력 평가후 우수기업 50업체 선정
-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각종 중소기업지원시 우선권 부여
-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 지원으로 판로지원 강화

- 우수기업중 우수사례(10건)를 선정하여 공개발표 등을 통한 벤치마킹 촉진으로 중소기업의 품질경쟁력 향상 유도

2. 주관 및 협조기관

- 주관 : 국립기술품질원(품질안전부 품질안전기획과)
- 협조 : 한국표준협회(품질경영추진본부)

3. 선정대상 분야

산업기계, 일반기계, 자동차산업, 철강, 비금속, 조립금속, 가전기기, 전자기기, 의료광학기기, 화학분야, 섬유, 기타(가죽, 신발, 운수장비, 고무제품 등) 분야의 중소제조업체

4. 신청자격 및 절차

가. 신청자격

- 국내에서 제조 또는 가공을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제품의 품질경쟁력을 확보한 업체

- 제품의 품질경쟁력을 갖추어 수출 및 내수판매의 신장이 현저하여 경영성과를 거양한 우수 중소기업

나. 신청기한

- '98. 5. 10까지(당일 도착분까지)

다. 접수처

- 국립기술품질원 품질안전계획과
(☎ 430-06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9번지 조흥은행 B/D 5층)
전화 : 0343)84-1563, 86-2891
FAX : 0343)84-4387

라. 기타 유의사항

- '97년 품질경쟁력 우수 100대 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도 '98년 50대 기업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하여야 함.
- 서류심사결과 일정수준 이상의 기업에 한하여 현지심사를 실시함.

5. 심사기준 및 방법

가. 현지심사기준

- 품질경쟁력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다음 분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함.
 - 품질시스템 : 경영자의 리더쉽, 협력·외주업체 관리, 구매자재관리, 공정관리, 검

사 및 시험분석, 내부품질검사, 교육 및 훈련 등

- 제품개발관리 : 제품설계 및 변경, 제품기획 및 평가, 제품화과정, 신뢰성평가, R & D 투자 및 기술력 등

※ 기술력은 별도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평가함.

- 경영성과 : 실적관리시스템 구성운영, 품질경쟁력 확보실적, 재무지표상의 수익성, 활동성, 성장성, 생산성 등

- 심사항목별로 5등급(A, B, C, D, E) 평가 문항에 의하여 수준평가

- 평가등급별 차등배점에 의하여 채점
- 총점 1,000점 만점으로 700점 이상 득점한 업체중에서 득점순위에 따라 우수기업 선정

- 현지심사위원은 “품질아카데미” 회원중에서 선발·활용

- 서류심사를 통하여 최종 선정대상업체(50개 업체)의 1.5배 업체(75개 업체)를 선정하고 현지심사 실시

나. 기술력 심사

- 기술력 심사항목
 - 외국 선진기술과의 수준비교
 - 기술과 품질인증 상태
 - 기술의 독창성 여부
 - 기술의 실용성 여부
 - 기술 및 제품의 수명정도 등

- 중소기업청(국립기술품질원)의 품질인증 마크획득 등
- 기술력 심사방법
 - 업종별로 전문위원회(5~7명)에서 심의 평가함.

다. 심사방법

- 현지심사는 업체당 1일간 전문심사원 2~3명이 현지에 출장하여 별지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하여 평가함.
- 기술력 평가는 제출된 자료와 당해 업체 담당자의 설명에 의하여 전문위원회에서 별지 기술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함.

라. 대상업체 선정

- 현지심사결과 평점과 기술력 심사결과 평점을 종합하여 우수기업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함('98. 6. 20까지)
- 선정 또는 미선정된 결과는 당해 업체에 별도 개별 통보함.

마. 선정업체중 우수사례의 모델화

- 50대 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중 특히 다른 업체의 귀감이 되는 우수사례는 품질경쟁력 심포지엄을 통하여 발표토록하며 각종 교육시 교재로 활용하는 등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함.

6. 선정된 업체에 대한 지원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원 시 우대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자금 지원대상 업체선정시 우대
- 상설전시장 등의 제품판매장 배정시 우대
- 보충역 대상산업 기능요원 복무업체 지정 시 우대
- 선정된 업체의 프로필을 제작하여 KOIRA 해외지사, 중소기업관련단체 및 업계 등에 배포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토록 함.